

## 과세이연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 )	

### 신청내용

⑥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--------

#### (전환전사업의 자산, 대토보상, 기존공장, 종전어린이집, 종전사업용부동산) 양도 명세

⑦ 자산명	⑧ 소재지	⑨ 면적(m <sup>2</sup> )·수량(개)	⑩ 양도일	⑪ 양도가액	⑫ 취득가액등
합계					

#### (전환사업의 자산, 대토보상, 지방공장, 신규어린이집, 신규사업용부동산) 취득(예정) 명세

⑬ 자산명	⑭ 소재지	⑮ 면적(m <sup>2</sup> )·수량(개)	⑯ 취득일	⑰ 취득(예정)가액	⑱ 이연취득가액 (⑰ - ⑲)
합계					

양도소득세	⑲ 과세이연 금액 $[(⑪-⑫) \times ⑰ \div ⑪]$	⑳ 과세이연 세액 $(⑰ \times \text{세율})$

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[ ]제30조제12항  
[ ]제73조제6항  
[ ]제79조의3제9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 
[ ]제79조의6제7항  
[ ]제116조의37제9항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### 작성 방법

1.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
2. "㉑ 자산명"란: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고, "㉒ 자산명"란에는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습니다.
3. "㉓ 양도가액"란: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.
4. "㉔ 취득가액등"란: 사업전환, 공장지방이전, 어린이집대체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의 경우에는 [취득가액+그 밖의 필요경비]를 적고, 대토보상의 경우에는 [취득가액+그 밖의 필요경비+장기보유특별공제액]을 적습니다.
5. "㉕ 이연취득가액"란: "㉖ 취득(예정)가액"에서 "㉗ 과세이연 금액"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㉖란에 취득예정가액을 적는 경우에 그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㉕ · ㉖란에 적지 않습니다.
6. ㉘ 과세이연금액 계산 시 적용금액은 각각 다음의 가액을 적습니다.

가.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3조)를 적용받는 경우

$$(㉓ \text{ 양도가액} - ㉔ \text{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㉖ \text{ 전환사업의 자산취득(예정)가액}}{㉓ \text{ 전환전사업의 자산양도가액}}$$

나.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2)를 적용받는 경우

$$(㉓ \text{ 양도가액} - ㉔ \text{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㉖ \text{ 지방공장의 취득(예정)가액}}{㉓ \text{ 기존공장의 양도가액}} \times (1 - \frac{㉕ \text{ 지방공장면적} - ㉑ \text{ 기존공장면적의 } 100\text{분의 } 120}{㉑ \text{ 기존공장면적의 } 100\text{분의 } 120})$$

다.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5)를 적용받는 경우

$$(㉓ \text{ 양도가액} - ㉔ \text{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㉖ \text{ 신규보육시설의 취득(예정)가액}}{㉓ \text{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}}$$

라.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7조의2)를 적용받는 경우

$$(㉓ \text{ 양도가액} - ㉔ \text{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㉖ \text{ 대토보상당액}}{㉓ \text{ 총보상액}}$$

마.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34)를 적용받는 경우

$$(㉓ \text{ 양도가액} - ㉔ \text{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㉖ \text{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(예정)가액}}{㉓ \text{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}}$$

7. "㉙ 과세이연세액"란: ㉘ 과세이연금액에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